



Stand Up  
For Digital  
Rights

##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 인터넷 접근권 확대를 위한 권고

##### 인프라: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특히 접속이 열악한 지역사회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투자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 비용 산정: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지원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저소득가구의 인터넷 접속 지원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지방 고객과 도시 고객 간의 가격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접근성 촉진:

- 민간 영역의 온라인 정보매개자(이하 '정보매개자')는 접속이 열악한 지역사회 또는 소수 언어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과 그러한 지역사회와 언어집단의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도입해 장애인 웹접근성을 촉진해야 한다.

##### 그 밖의 문제: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정부가 인터넷 접속 확대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법령의 도입을 시도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해야 하며, 그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인식제고 활동과 반대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명확하고 구속력있는 법적 명령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한 절대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망중립성을 위한 권고

### 망중립성 지원: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망중립성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그 무엇보다도 다음을 의미한다:
  - 네트워크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트래픽의 취급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 트래픽 관리 정책 및 기술적 프로토콜은 객관적 트래픽 관리를 목표로 설계되어야 한다.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시행중인 트래픽 또는 정보 관리정책 및 실무에 대해 투명해야 하며, 트래픽과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망중립성의 이상을 지지하고 촉진해야 하며, 최소한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 망중립성과 접속 확대:

- 서비스나 연결성의 축소를 대가로 인터넷 접근권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은 망중립성과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에 접근할 권리를 존중하면서 개방적이고, 비독점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있어 접속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쟁적 우위를 부여한다는 목표가 연결성이라는 더 넓은 목표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 제로레이팅(i.e.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은 망중립성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피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독립적인 검증을 위해 그 효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콘텐츠 관리에 대한 권고

### 명확성과 의사소통

- 정보매개자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콘텐츠와 관련된 정책과 실무상 취하는 조치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하며,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를 게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책과 조치가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이 이용자와의 법적

계약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운 개요 또는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 정보매개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 제도는 신고자와 이용자 양 측 모두에게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허위 신고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 문제적 콘텐츠 대응 정책(삭제 또는 조정 등)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명확하고 사전에 결정된 정책에 기반해야 하며 이념적 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가족친화적 서비스 등)에 근거한 규범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정보매개자는 그러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용자와 상의해야 한다.

### 신고 접수 및 심사 절차

-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신고하는 제3자는 해당 콘텐츠가 어떤 법규나 정책을 위반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콘텐츠 관리 정책이나 법규 적용시 일관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러한 정책이나 법규에 따라 신고를 주의깊게 검토해야 한다. 정보매개자는 콘텐츠관리제도의 남용을 추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경솔하거나 과도한 신고를 접수하는 이용자의 신고는 더욱 주의깊게 검토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콘텐츠가 신고나 제한의 대상이 될 경우 이를 작성하거나, 올리거나, 호스팅한 이용자에게 법적 또는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문제된 법규 또는 정책의 인용, 적용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절차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항변들을 포함해야 한다.
-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올리거나, 호스팅한 콘텐츠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예정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조치를 다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가능한 경우, 적절한 자원이 존재하고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문제적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한 모든 결정에 대해 이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콘텐츠 제한

- 제3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대상이 최대한 한정되어야 하고 관련된 법적 또는 정책적 규범을 위반한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오픈 방식의 콘텐츠 접근과 같이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할 필요 없이 해당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덜 침해적인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매개자는 합리적인 기술적 제약의 한도 내에서 해당 조치에 대해 법적 불복 등 이의가 제기되어 있는 동안에는 해당 조치를 반복할 수 있는 수단을 유지해야 한다.
- 이용자의 계정이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된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계정의 데이터를 저장 또는 반출할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명백히 불법적이거나(i.e. 아동을 성적으로

확대하는 이미지의 경우) 명확하고 구속력있는 법적 명령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된 자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권고

###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 정보매개자는 이용자 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과 관련된 정책과 실무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3자의 구체적 유형에 관한 목록과 제3자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정책이 이용자와의 법적 계약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운 개요 또는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 정보매개자가 프라이버시 또는 익명성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하는 모든 진술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정보매개자는 그러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자신이 수집 또는 공유한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해당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온라인 보안에 대해 이용자를 교육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의 모범적 보안 관행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체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매개자는 신속하게 완전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 데이터 최소화

- 정보매개자는 수집 및 저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양을 운영상 또는 상업적 목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법을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제한하기 위해 적절히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는 정보매개자는 고객이 해당 모델에서 탈퇴하는 대신 서비스를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의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이용자가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에 대해 수집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 자신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다만 해당 정보가 다른 정보와 함께 집적되었거나 처리되었고 추출이 불가능하거나 계속적인 운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데이터 보안

- 법적으로, 운용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이용자 정보는 저장중에는 암호화 및 익명화되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가능한 경우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해야 한다.
-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받는 연구 목적 데이터 제공의 경우, 정보매개자는 데이터의 적절한 익명화 또는 연구원에 대한 데이터 추가 유포 금지 요청 등과 같이 데이터 내 사적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익명성

- 정보매개자는 실명제 정책의 인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서비스의 일부를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매개자는 실명제가 이용자들의 권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 실명등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잊힐 권리

- 잊힐 권리의 적용을 받는 검색엔진은 삭제 요청 심사시의 정책, 규범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접수된 요청 건수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집계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 검색엔진은 잊힐 권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간의 적절한 균형을 담보하는 탄탄하고 상세한 정책과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검색엔진은 이러한 정책과 규범을 만들 때 시민사회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검색엔진은 잊힐 권리 적용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이 접수된 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과 해당 콘텐츠를 계속 전시할 공익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콘텐츠가 차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다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더 까다롭거나 최첨단의 사례를 위한 불복 또는 재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투명성과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위한 권고

### 투명성 보고

- 정보매개자는 정기적으로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투명성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 삭제 요청 접수 건수에 대해 요청의 범주, 요청자의 유형, 날짜 및 요청의 주제, 요청자의 위치에 따라 세분화된 통계
  - 이용자 정보에 대한 요청 접수 건수에 대해 요청의 범주, 요청자의 유형, 날짜 및 요청자의 위치에 따라 세분화된 통계

- 삭제된 자료나 해지된 계정의 통계를 포함해, 정보매개자가 서비스약관을 집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
- 정보매개자는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와 기타 다른 기관의 콘텐츠 제한, 서비스 차단, 또는 계정 비활성화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서비스 약관

- 정보매개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약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운 개요 또는 설명의 게재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된 서비스 약관을 공개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서비스 약관; 읽지 않음”과 같이 서비스 약관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획을 지원해야 하고, 이용자들이 실제로 약관을 읽게 하는 수단을 시행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서비스 약관에 대해 중요한 개정이 있기 전에 이용자와 상의해야 하며, 서비스 약관 개정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들이 개정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전 버전들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서비스 약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참여 방안을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가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 밖의 문제

- 정보매개자는 서비스 약관이 다른 관할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삭제 및 이용자 정보 요청과 관련한 이용자통지를 제한하는 법적 제약에 맞서야 하며, 영장카나리아(warrant canary)를 사용하는 등 공개를 용이하게 할 대안을 찾아보아야 한다(역주: 영장카나리아란 미국의 정보매개자들이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음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법적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기적으로 알리는 통지방식을 말함).
- 정보매개자는 이용자들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정보매개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기존의 산업적 의미와 이해는 더디게 진화한다는 점을 감안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물은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공격에 대한 권고

### 위험 평가

- 정보매개자는 신제품의 출시 또는 신시장에의 진출과 같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철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렇게 확인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

###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 정보매개자는 이용자의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는 정부의 요청에 대응하는 내부 절차를 설명하는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이용자들 중 인권운동가 또는 탄압받는 집단에 대해 구체적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들에게 구체적인 제언을 제공해야 한다.

### 저항

- 정보매개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즉시 정보 요청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정보매개자는 정부의 요구가 인권을 침해할 경우 그 요구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본국 정부 및 정부간 기구로부터의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다른 정보매개자들과 협력하여 문제가 되는 법, 정책, 또는 실무에 대해 공조하는 것이 포함된다.
- 정보매개자는, 적절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폭력적인 법이나 정책을 거부하기 위한 합법적인 대안을 추구해야 하고 억압적인 법이나 정책을 바꾸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 더욱 극단적인 사건인 경우, 정보매개자는 대안들을 주의깊게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정보매개자를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시키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보매개자가 심각한 인권 침해의 공범이 되는 국가에서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다.